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따라서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귀환과 재통합

RETURN AND REINTEGRATION

귀환과 재통합 RETURN AND REINTEGRATION



국제이주기구(IOM)는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주민과 사회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IOM은 이주민을 위한 선도적 국제기구로서, 국제 사회가 이주과정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며, 이주를 통한 사회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이주자의 존엄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행일	2011년 7월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밸리 서관 1101호
발행인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전 화	02-2183-0191
발행처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팩 스	02-2183-0192
지은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www.iom.or.kr	
옮긴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Publis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7, route des Morillons 1
1211 Geneva 19
Switzerland
1752 N Street NW, Suite 700
Washington, DC 20036
United States of America

Tel: +41 22 717 91 11
Fax: +41 22 798 61 50
E-mail: hq@iom.int
Internet: <http://www.iom.int>
+1 202 862 1826
+1 202 862 1879
mrfwashington@iom.int

ISSN 978-92-9068-219-6
ISBN 978-92-9068-606-4
©201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Design: Free Range Studio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이 출판의 저작권은 전적으로 국제이주기구가 소유합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녹화, 사진촬영, 스캔 등을 통한 무단 복제, 자의적 유통 및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귀환과 재통합

RETURN AND REINTEGRATION

책을 펴내며

지난해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ission in Republic of Korea)는 IOM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경험을 정리 및 체계화한 <인신매매 피해자 직접지원을 위한 IOM 핸드북> (이하 '핸드북')의 한국어판을 발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배포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본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는 핸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실무자들이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실무안내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피해자 식별과 인터뷰 기술', '직접지원', '귀환과 재통합', '아동', '역량강화', '정보 캠페인', '협력과 네트워킹'을 주제로 하여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국대표부는 '피해자 식별 및 인터뷰 기술'과 '직접지원' 그리고 '귀환과 재통합'을 먼저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가 부재한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본 지침서가 현장에서 피해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정부 및 시민사회 관계자 분들에게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지침서가 나오기까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의 홍수연, 김혜경, 이숙현, 이지연, 유미리, 윤보은, 방정원님이 번역에서 출판 준비까지의 전 과정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본 지침서의 출판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신 미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서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 정부 및 기타 IOM 협력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 지침과 실용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를 개발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한 문제의식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제공자를 비롯하여 법 집행 기관, 대중매체와 압력단체, 입법자 및 정부 내 정책 자문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인식제고, 맞춤형 교육, 훈련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는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전략을 구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요소를 소개한다.

IOM의 사명은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를 장려하고, 이주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주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과정으로, 이주뿐만 아니라 성별, 노동, 인권, 안보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IOM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타 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인신매매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IOM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인신매매 방지 사례들을 담아내고 있다. 본 지침서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인신매매 방지 교육 도구이다. 또한 각 지침서는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담고 있으며,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성과 지표 개발 및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를 통해 정부, 비정부기구 및 후원자는 IOM의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각 지침서에 포함된 내용은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IOM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에 따라 IOM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본 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효과적으로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가 있을 수 있다. 인신매매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인 만큼, 본 지침서는 광범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지는 않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미(美)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본 지침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개발팀

이 책의 활용법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시리즈는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 수준이 각기 다른 대상들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되었다. 각 지침서는 인신매매와 관련된 기본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고 여러 인신매매 방지 활동을 소개한다. 본 지침서 시리즈의 각 부분은 구체적인 필요와 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중요한 용어는 용어 해설에 추가로 설명하였고, 출판물과 웹사이트는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참여자를 위해 참고문헌과 출처에 정리하였다.

체계적인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확립하는 것은 종합적인 인신매매 방지 대책의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지속적인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인도주의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 또는 지원 제공자의 보안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안위를 보장하여, 지원 제공자와의 신뢰를 증진하도록 하는 피해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인신매매자 및 인신매매에 공조한 자를 체포하고 처벌하기 위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체계는 인신매매 범죄를 둘러싼 민감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피해자 귀환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의 존엄과 안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귀환과 재통합에 관한 본 지침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식별, 심터와 회복, 귀환, 재통합의 네 가지 주요 주제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 기획과 조율의 측면에서 귀환과 재통합에 관한 효과적인 구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다. 본 지침서의 권고사항을 가까운 시일 내에 모두 실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시된 원칙을 토대로, 기본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권장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ii	• 어떻게 시작하는가?	22
서문	iii	- 1단계: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기	22
이 책의 활용법	iv	- 2단계: 과정의 도표화	23
		- 3단계: 정보 수집을 위한 기준 수립	24
		- 4단계: 연계체계	26
		- 5단계: 심터 설립	28
		- 6단계: 귀환	29
		- 7단계: 재통합	31
1장 : 기본 개념		• 평가 도구	33
• 당신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가정해보자	1	- 사례 파일	33
•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1	- 주기적인 사례 검토	33
•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2	• 어떤 관계 기관이 있는가?	34
- 모집	2		
- 운송	2	4장 : 실행하기	
- 착취	4	• 귀환과 재통합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37
•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4	- 실행 계획	37
-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4	- 대화	38
- 격리 : 신분증명서류나 출입국 서류의 압수	4	- 구조 설계 기간	39
- 언어적·사회적 격리	5	• 실행의 장애물	39
-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5	• 누가 도울 수 있는가?	40
-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5		
•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6	5장 : 돌아보기	
•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6	• 지표(Indicators)	43
- 인신매매	6	- 지표란 무엇인가?	43
- 이주자 밀입국 중개	7	- 지표가 왜 중요한가?	43
•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9	-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44
•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9	• 귀환과 재통합 과정 평가하기	44
•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9	- 제도적 구조 평가	45
• 난제에 대한 대응	10	-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결과 평가	46
		• 성공 여부 판단하기	46
		• 결론	47
2장 : 귀환과 재통합		첨부자료 1 : 양해각서(MOU)	49
• 왜 귀환과 재통합이 중요한가?	13	용어 해설	57
• 귀환과 재통합의 기본 요소	14	참고문헌과 출처	65
- 피해자 식별	15		
- 심터와 회복	15		
- 귀환	16		
- 재통합	17		
3장 : 시작하기			
•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위한 기초 쌓기	21		
• 무엇이 문제인가?	21		
• 목표는 무엇인가?	22		

잘못된 상식

모든 인신매매 피해자는 국경을 넘는다.

대개 인신매매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고 있으나 한 국가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국내 인신매매라고 한다.

인신매매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인신매매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지만 조직범죄의 수준, 법체계 및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모집 - 강제 또는 기만

운송 - 국경을 넘거나, 합법적 또는 불법적으로, 또는 국가 내에서

착취 - 인신매매자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매매

모집

인신매매는 흔히 기회에 대한 거짓된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이 어떤 일에 고용될지는 알고 있으나 고용 조건은 알지 못한다. (모집,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특정 산업에서 일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예, 농장 근로자 등)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속기도 한다.

그밖의 경우, 피해자는 합법적인 일에 고용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바와 다른 종류의 일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한다. (모집, 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이때, 피해자들은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어 대개 식당에서 일하거나 사무직, 가사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합법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무력으로 피해자를 납치하는 인신매매자도 있다. (모집, 강제적인 경우)

모집 방법과 관계없이 위에서 제시된 모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착취적인 조건에서 거의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장시간의 노동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신분증명서류나 출입국 서류를 압수당하여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폭력으로 위협당하거나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알지 못한다.

운송

인신매매에 대한 국내법과 정의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송된다는 인신매매 범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국경을 넘는 것만이 인신매매 범죄의 구성 요건은 아니다. 인신매매는 동일한 국가 내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국경을 넘는 피해자에게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과 연관되어 단계별로 일어난다. 피해자는 출신국 내에서 이송, 인수되어 국외로 매매되기 전까지 은신처에 기거하며,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경유국을 거치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게 된다. 경유국에서 피해자가 머무는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피해자는 최종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신체적·성적 학대 및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각 경우 과정에서 매매 혹은 재(再)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운송 방식이나 지리적 맥락에 따라 경우 과정은 없을 수도 있다. 즉, 피해자는 단순하게 동일한 국가 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거나 아예 다른 국가로 바로 이송되기도 한다. (예, 항공을 통해 남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바로 이송되는 경우)

운송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다른 국가로 밀입국시킬 수 있는데, 이때 피해자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인신매매자가 건네주거나 훔치거나 또는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가 정식 비자 승인을 받은 공인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입국하기도 한다.

이동은 공공 혹은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육로, 해로, 또는 항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거나, 다른 국가로 밀입국하는 비정규 이주자가 포함된 집단에 속해서 이동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선박이나 차량의 비밀 공간에 은닉될 수도 있고, 단순히 트럭이나 자동차의 뒤 칸에 숨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보통 국경 검문소나 공항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인신매매 범죄 조직의 일원과 동행하게 된다. 신분증은 각 국경 검문소에 제시해야 할 때를 제외하면 항상 인신매매자가 소지한다.

인신매매는 흔히 저개발국에서 부유한 목적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발칸국가에서 유럽연합국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중동국가로, 중남부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한다. 반면에 빈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요가 있는 관광지나 경제성장 중인 도시와 같은 곳으로 경로가 형성되기도 한다. 발칸국가의 경우와 같이 대규모의 국제 평화유지군이나 민간 계약자(civil contractor)가 주둔한 곳에 특정한 노선이 형성되기도 한다. 또한 역사적·언어적 요인이 반영되어 경로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서유럽으로 가는 브라질인 피해자는 종종 포르투갈을 거쳐 가는데, 이는 사용언어가 같아 인신매매 과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및 카리브 해 연안 국가와 그들의 전 유럽 식민통치 국가들의 사례에서처럼, 과거의 식민지 관계가 비자발급을 위한 조건에 영향을 미쳐 인신매매 경로가 달라진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이미 기만된 상태로 고향을 떠나게 되지만, 때때로 차후에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밀입국자가 그 과정에서 인신매매자에게 잡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해서 그 과정을 일반화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지 상황과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야 가장 인신매매에 취약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인신매매자에게 유인되어 착취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의 경로는 한 가지 요소를 일관되게 반영하여 형성된다. 피해자들이 제공하게 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들을 착취해서 얻는 이익이 가장 큰 곳에서 인신매매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잘못된 상식

합법적 이주자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는 불법으로 입국하기도 하지만, 법적 서류를 이용하거나 유효한 취업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피해자도 있다.

기억하세요

모든 인신매매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의 목적은 성적 착취이다.

일부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하지만 강제노동이나(예, 공장이나 농장 등) 가사노동 또는 무장전투 등과 같은 목적으로 매매되기도 한다.

착취

인신매매의 핵심은 착취이다. 인신매매자는 오직 피해자를 착취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피해자를 이송시킨다. 일부 인신매매자는 큰 돈을 벌기도 하지만, 무급 노동이나 서비스와 같은 이득만을 취하기도 한다. 착취는 보통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에 시작된다.

인신매매자는 어떻게 피해자를 통제하는가?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강압기제를 사용한다. 인신매매자의 근본 목적은 피해자를 착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신매매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동시에 도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신매매자는 다양한 기제를 사용한다. 착취 유형에 따라 통제 방법은 단독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대다수의 인신매매 피해자는 여행서류와 경비를 마련할 수 없다. 인신매매자는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목적국에서 벌게 될 돈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미리 빌려준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을 사전에 계획하여 이후에 피해자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발생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자의 실지출액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높은, 수천 달러에 달하는 고액이다. 인신매매자는 대개 보다 강력한 인적 구속을 위해 이동경비에 자신의 중개수수료까지 더해 부채를 높인다. 극도로 높은 부채는 인신매매자에게 이득을 창출해주는 동시에 피해자를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제3자에게 매매될 때 지불된 금액이 피해자 본인의 빚이 되면서 부채로 인한 인적 구속을 당할 수도 있다. 설사 피해자가 강압적으로 납치되어 운송되었다 할지라도, 인신매매자가 납치자에게 지불한 구매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착취되기도 한다.

격리 : 신분증명서류나 출입국 서류의 압수

인신매매자는 대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직후 피해자의 신분증명서류와 출입국 서류를 압수한다. 이는 피해자의 공식적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비정규 이주자 신분이 되면서 도움을 청하거나 탈출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경찰이 억압적인 권력집단으로 인식되는 국가 출신이라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가는 즉시 송환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이는 피해자가 기존에 경찰에 대해 가지는 선입견을 더욱 공고히 한

다. 불행히도 인신매매자의 이러한 주장이 종종 들어맞곤 하는데, 이는 목적국에서 경찰이 발견하는 대부분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중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보다는 즉각 국외로 출국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에게 경찰은 부패했고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나 다른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 미소지와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협박 수단으로 이용한다.

언어적 · 사회적 격리

피해자는 모국어로 소통하거나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환경에서 감금당하기도 한다. 이는 인신매매자가 격리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는 종종 외부와의 소통을 일체 차단당한다. (예, 서신교환이나 전화통화를 할 수 없다.)

폭력과 공포심의 사용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폭력과 공포심을 사용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복종시키기 위해 구타, 강간, 감금하고, 오랜 기간 고립시키면서 음식과 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물을 투여하고 심지어 고문하기도 한다. 이러한 학대는 처벌로 가해지기도 하고, 명령을 위반할 시에 일어날 결과를 피해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경고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신매매자는 때때로 피해자 한 명을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 본보기로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기도 한다. 성적 착취의 경우 수치심이 강력한 통제 기제가 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성을 판매하는 것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인신매매자는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자신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가족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복종시킨다. 특정 문화권 출신의 피해자에게는 특유의 심리적 강압이 효과적이다. 특정 문화 집단에서의 의례, 의식이나 여타 상징적 행위(예, 부두교의식)는 해당 문화권 출신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어 인신매매자의 통제권을 강화시킨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복과 협박

피해자를 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문제시되는 협박의 유형은(출신 국가나 출신 지역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복성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협박이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자는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애칭이나 주소 등과 같이 가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각인시킨다. 이러한 협박은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저항하거나 도주함으로써 지인들이 위협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잘못된 상식

여성과 아동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

많은 인신매매 연구에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여성과 아동임이 밝혀졌지만, 이러한 연구 대부분은 성적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남성이 인신매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은 노동 착취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과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인신매매 사업에 범죄자들이 몰리는가?

인신매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윤이 높은 범죄에 속하며, 금전적 이득은 인신매매자와 관련된 범죄 조직망의 주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인신매매자가 기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설사 방지 법안이 있다하더라도 사법기관이 이를 잘 이행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지 않아 인신매매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또한 인신매매자가 한 사람을 매매하는 데 투입하는 초기 비용은 높지 않은 반면, 일단 피해자를 모집한 후 반복적으로 착취하여 얻는 이익은 매우 높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지금까지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방식과 범죄자가 사람을 매매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앞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인신매매

2000년 국제사회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의 부속의정서를 통해 인신매매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² 2000년 12월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방지, 억제, 처벌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가 조인되었다. 이 의정서의 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a)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유괴, 사기, 기만, 권력 남용이나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 (b) (a)항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c) (a)항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것은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 (d) 아동은 18세 미만인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에 발효되어 현재 117개국이 서명국으로, 146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본 의정서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표준화하는 중요한 국제적 문서이다.³

본 의정서는 가입국가들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구한다.

- 인신매매의 범죄화
-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에서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제공
- 피해자 귀환 지원
-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탐지할 수 있는 이주 관리 (예, 국경 통제, 출입국 서류)
- 인신매매의 방지와 근절을 위한 훈련, 연구, 정보 제공
- (서명이나 비준과 관련된) 기술적 조항의 준수

이와 같은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인신매매가 발생하기까지 모집, 운송, 착취의 세 가지 상호의존적인 요소가 누적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인신매매 행위는 앞서 언급된 수단을 통해서 발생하며 행위와 수단 모두 착취적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깊다.

특수한 사례로서 아동

인신매매방지의정서는 세부규정 (c)항목에서 아동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한다. 이 항목에서는 인신매매의 성립 요건 중 수단의 필요성을 제외한다. 달리 말하면, 아동 인신매매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이 없어도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녀를 노상구걸과 같은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 설령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일정한 기간 이후에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노동에 대한 각국의 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의정서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주자 밀입국 중개

인신매매에 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인신매매를 이주자 밀입국 중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유엔은 「육로, 해로, 항공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에 조인하였다. 밀입국방지의정서 3항은 밀입국 중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면서 이들이 상호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기억하세요

인신매매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강압을 행사하는 것이다. 밀입국은 조직적이고 비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다.

- (a) 이주자 밀입국 중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다른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b) 불법 입국은 입국하는 국가의 법적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국경을 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그림은 인신매매와 밀입국 중개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 모두 사람과 관련된 수익사업이고 범죄조직과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 성격은 상당히 다르다. 밀입국 중개는 불법 입국과 관련이 있다. 이때, 매매는 불법적인 국가 간 이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발생한다. 따라서 밀입국 중개는 인신매매에 내재된 착취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신매매에서 매매되는 대상은 사람이고, 이는 이들의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착취를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신매매는 개인에 대한 범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체로 통제와 강압을 경험하고 이동을 제한받으며 서류를 압수당한다. 이들은 국가 간 혹은 한 국가 내에서 이주를 한다.

두 범죄를 구분할 때에는, 범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밀입국 중개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게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을 받으려 한다. 인신매매자는 기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을 착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어 금전적 혹은 다른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

인신매매는 기회의 부족과 빈곤에 기인한다. 경제체제 전환의 실패, 약한 통치 구조, 부정부패, 뿌리 깊은 가부장제로 인한 성차별 또한 인신매매 문제를 악화시킨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주한다.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가거나 전쟁, 박해,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이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몇몇 국가는 국경 통제와 입국 요건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합법적 이주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지만, 목적국에는 여전히 공식적 · 비공식적 영역에서 다양한 범주의 노동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이 서로 결합되어 비정규 이주와 인신매매의 발생률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인신매매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본 인권은 지속적으로 유린당한다. 인신매매된 사람들은 위협, 구타, 강간을 당하고 혹은 죽는 경우도 있다. 인신매매자의 통제 아래 있는 피해자는 대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해 도움을 청하지도 못한다. 탈출에 성공한다 해도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정규적인 이주 지위 때문에 당국에서 추방당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 또한 인신매매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도 피해자가 겪었던 학대와 관련된 신체적 · 심리적 결과 및 외상은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는 인신매매로 인한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강요당했던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경험이 지역사회에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이 나서서 피해자의 귀환을 거부하며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재편입하는 것을 막거나 곤란하게 할 수도 있다.

인신매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신매매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어떤 국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범죄 집단이 사람을 속이고, 모집하고, 운송하고, 착취하기 위해 해당 경로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직들은 종종 무기와 마약밀매, 돈세탁과 관련된 범죄 활동과도 연결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인신매매자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만큼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 및 공공 부문의 불안정은 국가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잘못된 상식

교육을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다.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에 노출된 피해자도 있지만, 사실 다양한 사람이 매매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취업 기회를 찾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잘못된 상식

인신매매는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문제이다.

동유럽의 착취적 인신매매와 동남아의 아동 인신매매가 자주 보도되지만, 인신매매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에서 발생한다. 세계화와 함께 전 지구의 상호연결성이 점점 증가하면서 초국가적 범죄의 발생 또한 증가하고 있다.

! 기억하세요

모든 나라는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인지 또는 복합적 성격의 국가인지를 막론하고 인신매매 문제에 취약하다.

난제에 대한 대응

인신매매는 매년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⁴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정부, 정책 입안자,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어려운 임무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인신매매 근절 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1. 방지
2. 보호
3. 기소

인신매매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응은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폭넓은 동시에, 지역적인 맥락에서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신매매자는 이주 동향을 파악하여 잠재적으로 착취가 가능한 이주 집단을 물색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계획하는 데 있어 한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신매매의 특수한 기제와 지역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지 활동은 인신매매 근절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출신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경유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합법 또는 불법으로 국가를 거쳐가는 다양한 이주 집단들 중에 인신매매 집단을 식별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을 교육할 수 있다. 목적국은 국경 내에서 일어나는 착취 상황을 검토하고, 이주자의 노동권 강화에 힘쓰며, 비정규 이주자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신매매 방지 활동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는 인신매매 근절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본적 필요(예, 쉼터, 의료 및 심리적 지원, 음식과 의복)를 충족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사건을 다루면서 기밀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 또한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필수적이다. 즉, 피해자의 신분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지원 제공자를 인신매매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역 사회의 낙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호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적·정치적·법적 환경 구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국 출신 피해자가 (특별한 경우 당국과의 협조를 위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 비자를 마련할 수도 있다. 적절한 법률 제정은 인신매매자 기소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피해자가 사법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정의를 실현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보호는 피해자의 지역사회 혹은 출신국으로의 귀환을 돕는 것, 즉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과 재통합을 포함한다.

인신매매자의 기소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다.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법안과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인신매매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어떤 국가는 인신매매자의 자산을 몰수하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인신매매 범죄의 초국가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목적국의 문제에만 대처하는 것은 부분적인 해결일 뿐이다.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여 인신매매 기제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식별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자를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다음의 주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 중심 관점
- 성 인지적 대응
- 협동과 협력관계

가장 성공적인 전략은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법적인 틀을 강화하여 인신매매자를 기소하며, 나아가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중심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관련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신매매에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임무이지만, 이는 전 지구 공동체가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발전시키고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주 /

¹ '피해자'라는 단어의 사용이 취약성과 무력함을 강조한다는 점 때문에 때때로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신매매된 상태에서 당국뿐 아니라 인신매매자에게 좌지우지 되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현실을 기술하기 위해 본 지침서에서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계속 취약하다던가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경멸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 지침서의 목적에 맞게, '인신매매 피해자'라는 말은 인신매매된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² 협약과 의정서의 공식문건은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³ 가장 최근의 정보는 <http://www.unodc.org/unodc/en/treaties/CTOC/signatures.html>을 참조

⁴ 인신매매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우며 추산도 다양하다.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600,000명에서 800,000명 가량의 사람이 인신매매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연간 백만 명의 아동이 인신매매된다.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인신매매를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8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마약밀매 수치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 IOM 2002

사람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사진은 IOM 루마니아의 협력으로 템포 광고기획사(Tempo Advertising)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주의

전체 지원 과정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보안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보호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망은 귀환과 재통합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시 되도록 한다. 보호 원칙의 핵심은 피해자의 신분, 거처 및 환경이 보호망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밀보장에 관한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이는 인신매매자나 다른 사람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협,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귀환과 재통합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때,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재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재(再)인신매매될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귀환과 재통합의 기본 요소

인신매매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이다. 사람들은 계약 노예 노동자, 가사 도우미, 공장 노동자, 결혼, 입양, 성 노예, 구걸, 포르노 혹은 낙타 기수² 등의 목적으로 인신매매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경을 넘어 이웃국가로, 또는 초국가적인 범위로 인신매매될 수 있다. 여성과 아동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귀환과 재통합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식별
- 피해자 쉼터와 회복
- 피해자 귀환
- 피해자 재통합



피해자 식별

피해자 식별은 성공적인 귀환에 이르는 지원 과정의 첫 단계이다. 피해자 식별은 인신매매방지외정서 또는 국가가 규정한 정의에 입각한다.

국가 상황에 따라 이민국, 경찰 혹은 기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기타 관련 시민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인신매매 관련 국내법이나 국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국내 입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유사하게, 보호와 쉼터 제공을 위해 피해자를 검증된 기관으로 연계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연계체계가 없다면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3장 참조)³ 피해자로 식별된 사람을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환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체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련의 서비스에는 최소한의 숙식 제공과 의료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다 체계적인 쉼터는 심리사회적 지원, 의학적 치료, 피해자 회복과 이후의 재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포함하는 전 영역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밀보장과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기관으로 연계하기로 결정했다면 먼저 그 기관이 보호망 내에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 식별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피해자를 착취적인 환경에서 구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쉼터와 회복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사람은 회복과 사후 관리를 위해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쉼터 혹은 보호소로 재배치되어야 한다. 쉼터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여 추후에 자발적인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복 과정을 더욱 세심하게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는 귀환 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신체적 외상이나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약물에 의지하거나 정신적인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 있다. 그러므로 쉼터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숙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지원, 심리사회적 지원, 종합적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겪었던 착취와 학대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쉼터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회복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신체적·심리적 지원이 쉼터의 역량을 벗어날 경우, 이들을 적절한 의료 시설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의료 시설로 이동하거나 머무를 때를 대비해서 적절한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의

피해자를 구급시설 혹은 구류시설로 연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피해자를 다시 착취와 학대의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피해자 식별: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인신매매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고용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이 인신매매의 국제 기준이나 국내 기준에 명시된 수단에 의해 착취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



목표

쉼터와 회복: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개인에게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되어있는 환경과 관련 사회지원을 제공하는 것



목표

귀환: 인신매매 피해자가 쉼터 혹은 보호소를 떠나 적절한 주거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곳으로의 자발적인 이동을 보장하는 것⁵

피해자는 쉼터에 머무르는 동안 특수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지원 제공자를 하루 24시간 중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쉼터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 교환을 위해, 실력 있는 통역사를 섭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통역사의 역할은 피해자의 쉼터 거주 초기에 특히 중요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법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쉼터 거주 기간 동안 지원 제공자는 피해자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이름과 거주지, 국적, 결혼 상태, 신분증 번호(알고 있을 경우),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된 정황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가 외국 국적자일 때는, 가족을 찾고 귀환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류 정보(여권, 신분증명서류 등)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서류가 없다면, 출입국 서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적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모으도록 한다. 이때, 위협적이지 않고 자발적인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정보 수집은 피해자 상황에 따라 여러번에 걸쳐 실시되어야 한다.

귀환

인신매매의 성공적인 사례 관리에서 중요한 목표는 피해자를 출신국이나 출신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피해자를 안전하고 보안이 잘 된 쉼터 환경에서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가정환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계획이 수반된다.

귀환과 재통합 패러다임은 안전하고 존엄성이 보장되는 귀환을 목표로 한다. 많은 경우, 피해자는 예상 이동 경로와 방법이 달라졌음(노선 변경, 여권 변경, 이민국에 허위 신고를 하라는 지시 등)을 발견하고 자신이 인신매매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인신매매 피해자 귀환을 최대한 안전하고 일관성있게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가 귀환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자존감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자나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가 귀환 지원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

피해자의 필요를 존중하며 안전한 귀환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귀환 과정은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도 귀환 과정이 지체된다면, 피해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지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귀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면, 이 상황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귀환은 국가 내에서(국내 인신매매 피해자), 이웃국가 사이에서(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국제적으로(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이루어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귀환을 위한 이동은 육상 교통수단이나(국내 혹은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의 경우), 국내 혹은 국제 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항공을 통한 귀환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항공을 통해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빠르고 위험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재통합

피해자가 겪은 인신매매 사건의 심각성과 정신적 외상 정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는 귀환 전에 쉼터나 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지원으로 효과적인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지원에는 의료검진, 심리사회적 지원, 생활기술 함양 교육, 직업기술 교육 등이 포함된다. 재통합 과정의 주요 목표는 피해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돕고, 재(再)피해자화 될 수 있는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다.

재통합은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 환경에서 가족, 친구 및 공동체의 지지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출신 지역으로 피해자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입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귀환 전에 받았던 지원과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재통합은 피해자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물질적 혹은 기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 특별 서비스 제공자, 비정부기구 혹은 재통합 체재를 통해 모든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었을 때 이러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위 기관들은 지원 서비스 제공과 피해자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신매매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할 때, 사회 재통합 과정의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때, 위 기관들은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이나 출신 지역이 피해자 착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을 경우, 재통합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있었다거나, 가족이 가족 구성원의 매매 및 교환이나 인신매매 사건에 관여한 경우, 피해자를 위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부와 같은 기타 전문기관이 보호 쉼터와의 연계, 지원 및 기타 적절한 서비스를 찾는 데 가장 적합하다.



목표

재통합: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과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NOTES: _____

3장 시작하기

PART THREE GETTING STARTED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위한 기초 쌓기

효율적인 귀환과 재통합 과정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요소들을 포함하는 대응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 구조에는 피해자 식별, 쉼터제공, 귀환과 재통합이 있으며, 일련의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기능하여 보호 구조와 지원 과정을 형성한다. 귀환과 재통합 구조를 확립시키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피해자 귀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자에 대한 수사과 기소가 증가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인신매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방법을 개발할 때 정부가 직면하는 문제는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작업이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 지원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한데, 이는 주로 음지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인신매매 문제가 지역사회 내에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인신매매를 범죄로 규제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식별된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주법이 비정규 체류자격을 지닌 인신매매 피해자(기만당하거나, 강요당하거나, 강제로 불법 이주자 지위를 얻게 된 자들)와 다른 불법 이주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밀히 따지면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불법체류 신분이므로 법 집행 기관은 법적인 제약에 부딪히게 되고 사회복지부, 비정부기구 등 인신매매된 이주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신매매 사례가 확인된 경우에도 대개 정부는 사건을 다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외상을 입거나 위협에 처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세요

무엇보다도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는 이주 신분과 관계없이 특별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목표는 무엇인가?

귀환과 재통합 구조를 세우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피해자로 확인된 자를 구금상태나 국외로 추방당하는 상황에서 구조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자발적인 귀환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효과적인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확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귀환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수는 국가별로 다르고, 각각의 사례에서 발생 가능한 변수나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하나의 해답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또한 사후에 대응하기보다는 사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다음의 일곱 단계가 모든 상황과 요소를 고려하지는 못하지만, 종합적이고 기능적인 귀환과 재통합 체계를 세우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1단계 :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기

인신매매 범죄는 독특한 이주 범죄'이므로 이주기관, 사법기관, 사회복지기관, 기타 정부기관이 각자 준수하고 있는 내부 원칙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인신매매된 이주자가 설령 이주법을 어겼을지라도, 이들은 인신매매자에 의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법률제정이나 국가 정책 집행을 통해 이 원칙이 성립되면, 이민 지위나 시민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밝혀진 외국 국적자가 불법 입국했거나 이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인신매매 사건을 다루는 데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자는 대개 인신매매자의 강압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법 집행 시설이 아닌 적절한 쉼터 혹은 보호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국가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담당 기관 대표들이 모여 태스크포스(task force)나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는 외교부, 경찰, 이민국, 사회복지부, 사법부 등 다양한 정부 부처와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태스크포스나 위원회의 주요 사명은 인신매매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다루는 과정을 이해하며, 사건 처리를 위한 투명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단계 : 과정의 도표화

인신매매 피해자가 귀환과 재통합을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과정 중심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기관과 지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화하는 작업이다. 2장에서 소개한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 도표를 정리하여 활용해 보길 바란다.



기관의 지원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각 기관의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에 관해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때, 정보 공유에 대한 협조를 포함해야 한다. 도표를 그리면서 질문에 대답하여 보도록 하자.

- 잠정적인 피해자를 확인하였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해야 하는가?
- 피해자가 다급한 위협에 처해 있다면 누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
- 누가 피해자 인터뷰를 담당할 것인가?
- 피해자를 쉼터로 이송하는 일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 통역이 필요한가? 통역을 맡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 교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정된 연락 담당 기관을 통해서인가? 연락 담당 기관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기억하세요

모든 서비스는 피해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례

만일 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면, 남성 경찰관 혼자(설령 두 명이라고 해도) 취조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여성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여성은 남성 경찰관이 자신이 붙잡혀 있던 업소에 드나들었다고 생각하여 두려움과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러한 심리적 억압과 학대는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조종하고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본적인 책략이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에는 특별히 훈련된 여성 경관이나,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여성 경관을 포함해야 한다.

주의

정보 제공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긴급한 사안이나 잠재적으로 피해자의 인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전반적인 의료 검진은 필요할 때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그때마다 비밀보장과 자발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HIV/AIDS 검사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 피해자에게 의료 지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누가 지원할 것인가?
- 어떤 기관이 상담과 기타 사회서비스를 담당할 것인가?
- 귀환 전 임시 거주를 허가하기 위해 관리 당국은 어떤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가? 특별 비자 혹은 거주 허가가 필요한가?
- 피해자가 귀환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인해 실제 귀환이 연기될 수 있는가?
-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가?
- 피해자는 어떻게 귀환할 것인가? 민간 항공기 혹은 육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 피해자 지원과 유지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특별부서 예산을 통해서인가 혹은 외부 지원이 있는가?

도표를 그리고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는 것은 귀환과 재통합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데에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담당 기관이 없는 영역이나,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 기관이 역량 문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발견할 수 있다.

3단계 : 정보 수집을 위한 기준 수립

정보 수집은 전반적인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모든 범죄 수사에 있어서 정보 수집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담당기관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거나 최종 귀환 및 재통합을 계획할 때에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신매매 범죄의 잔인한 속성과 피해자가 경험하는 착취의 강도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또한 오역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범죄 수사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재통합에 필요한 정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피해자가 반복적이면서도 심문하는 식의 인터뷰로 인해 또다시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신매매자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조종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적 학대를 사용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는 대개 이주법이나 기타 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인신매매자는 이를 문제삼아 피해자가 법을 어겼으므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다. 또는 인신매매자들은 사법 당국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교육한다. 피해자가 탈출하여 경찰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고향에 있는 가족을 찾아내어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자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통제의 효과는 상당히 심각하여, 지원 제공자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매우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환경은 최대한 안전하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편안

한 분위기여야 한다. 피해자는 인터뷰 대상이지 심문 대상이 아니다. 심문하듯이 질문해서는 안 되며,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뷰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구출되거나 도망쳐 나온 환경이다. 또한 피해자가 특별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인신매매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사람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나 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은 실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 진행자는 절대로 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

정보 수집에 있어 기준을 세우고 개인 맞춤형 사례 파일을 개발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지원

이 전문가들은 신체적·심리적 학대를 겪은 피해자를 지원했던 경험과 인신매매 관련 외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 인터뷰 진행자나 수사관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학대당한 피해자를 인터뷰할 때 필요한 기술
- 국제 기준
-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적 정의, 법률 및 정책
- 이주자의 권리
- 성 인지적 접근
- 아동 친화적 절차
- 비밀보장에 대한 규정

기본 정보를 담은 인터뷰 양식의 개발

다음의 정보는 사례 파일의 기본사항으로,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상세히 발전시키고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이는 상담 정보 업데이트를 비롯한 사항을 포함한다.

- 개인 자료: 이름, 생년월일, 국적, 모국어 및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영구 거주지, 최종학력, 부모와 직계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거주지, 개인 신분/여권 번호(서류가 있는 경우)
- 병력 및 현재 건강상태: 당뇨, 천식, 간질, 임신, 약물 의존,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부상
- 인신매매 상황과 관련된 정보: 인신매매자의 이름, 소재지, 인신매매된 날짜, 이동 경로와 방법, 강요/기만/강제의 방법, 신체적 학대, 지불한 금액, 지불 받은 금액, 감금되거나 채무로 인해 구속되거나 그 외 알려진 다른 피해자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연루 여부
- 개인정보(사생활) 진술
- 귀환과 재통합 지원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서류, 또는 지원 제공 예정 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서류

주의

처음에는 피해자가 전체 혹은 일부 정보를 밝히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터뷰 과정 동안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질문은 이후 좀 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할 수도 있다.

주의

부모의 이름은 종종 출입국 서류나 기타 신분증명서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례 파일은 비밀보장 원칙의 가장 엄격한 수준에 맞추어 관리되어야 한다. 사례 파일이 관리자 없이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된 보관소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4단계 : 연계체계

인신매매 피해자가 경험한 외상의 정도, 범위,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외상이 피해자에게 발현되는 형태도 다양하다.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경험이나 환경에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지원 제공자들은 피해자들의 개인, 문화,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인신매매 전후 및 그 과정에 있어서의 경험의 차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맞춤형 대응이다. 인신매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는 없으며, 피해자 지원 역량은 국가별, 기관별로 각기 다르다. 그러나 회복을 촉진하는 지원 과정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이나 시설은 거의 없다.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의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특정기관이나 정부 부처가 피해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만큼 광범위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이 식량과 쉼터를 제공할 수는 있어도 특수 의료 지원이나 심리 상담을 담당할 전문가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건부, 병원, 비정부기구 및 다른 특정기관에 속해 있는 의료 전문가가 관련 교육을 받아 연계 과정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기관과 지원 제공자는 생활기술함양 교육, 직업 교육, 동료 상담, 자발적 귀환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와의 첫 만남 이후부터 이들이 지역사회로 최종 귀환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통틀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격을 갖춘 각 지원 제공기관의 지원역량을 활용하는 연계 절차를 확립하는 것은 인신매매에 대해 전반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계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한 쉼터, 보호소, 회복 시설로 재배치되어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고 피해자 귀환을 원활하게 하는 개별 맞춤 사례 관리 절차가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지원체계를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요소이다.

1. 피해자 식별을 위한 절차: 국제 의정서 혹은 국내법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기준과 피해자/아동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선임한다.

2. 확인된 피해자를 구금 시설, 처벌 시설, 그 밖의 유사 시설에서 구조하기: 인신매매 피해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금상태 혹은 이와 유사한 환경에 놓이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들을 가둬서도 안되고, 감옥에 수감하거나 범죄자와 함께 수용해서도 안된다.

3. 피해자를 보호소, 임시 쉼터, 회복 시설로 이송하는 절차: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자는 사례에 맞게 적절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하고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피해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절차를 연계망 내에 확립해야 한다. 비밀이 보장되면서도 보안이 철저한 의사소통 경로를 만들고, 전 이송 절차를 아우르는 중점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전문화된 심리사회적·의학적·법적 상담, 통역 및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각 피해자가 겪는 외상의 정도가 다르고,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도 다양하다.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자원과 역량을 토대로 인신매매 피해자의 개별적 상황과 필요에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안전한 귀환을 위한 절차: 피해자를 출신국/지역사회로 이송하기 위해 공조 절차가 확립되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적합한 출입국 서류를 확보하고, 국내, 국경 간 혹은 국제적 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이동 시에 필요한 안전 조치와 경호를 비롯하여 적절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 지속적인 회복 지원과 재통합 지원 연결하기: 피해자 회복 과정은 귀환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는 사후 의료 지원이나 상담, 재통합 지원, 직업 기술 교육 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핵심 원칙 - 안전, 보안, 인권에 기초한 접근

적절한 연계체계는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와 사후 지원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계체계는 피해자 지원을 맡은 기관들 사이의 공조를 조율하는 역할 뿐 아니라, 투명한 지원 기준을 확립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한다. 또한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연계체계 구조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발전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피해자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모든 연계체계/네트워크의 최우선 목표이다. 피해자 보호는 모든 공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편안함을 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 및 지원과 보호 제공자의 개인적인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연계 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을 적절하게 심사하고, 피해자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행동 기준과 운영절차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사례의 비밀보장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관련된 상세한 신상 정보와 피해자에게 제공된 보호 서비스(예, 쉼터, 보호소, 기타 보호 시설로의 이송, 귀환 시 이동에 대한 정보 등)는 연계체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의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인신매매 경험 중 느꼈던 통제당하거나 갇힌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는 구금시설의 다른 피 억류자에 의해 학대당할 수도 있다. 의심이 가는 시설에 대한 일제 급습 혹은 수색이 있었을 경우, 피 억류자 중에 인신매매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기밀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낙인 방지를 위해 언론 협약을 만들고 이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충분한 정보 제공에 기반을 둔 동의:** 피해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한다.
-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권리:** 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 **자기 결정권:** 피해자의 요구와 필요를 존중해야 한다. 성인 피해자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고, 18세 미만 피해자일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발성:** 피해자를 출신국 혹은 출신지역 사회로 귀환시킬 때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계체계 개발 시, 연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관이나 독립 시설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단 확보는 이동과 쉼터 위치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고 쉼터로의 접근이나 쉼터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례 관리 과정에서 기관 간의 공조를 도모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겪는 외상의 정도를 고려한 후, 지체, 혼란 및 여타 공조 결렬 등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교환 경로를 책임지는 중점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체 기관도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호망이 확보되고 권한이 없는 개인이 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능하다면 사례 관련 정보를 보안처리된 통신망(전화, 라디오 등)이나 암호화된 전자 메시지를 통해 보내야 한다.

5단계 : 쉼터 설립

성공적인 귀환과 재통합을 위해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된 자를 적절한 쉼터 혹은 보호소로 재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는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 머무르면서, 인신매매 경험에서 회복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피해자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개인별 외상의 정도와 정신적·신체적 생존 기제에 따라 초기 회복 기간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피해자는 일련의 경험으로 이미 타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 사람들의 호의조차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종의 자기 보호책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하거나, 거짓 정보를 줄 수도 있다. 이때, 좋은 쉼터는 피해자가 상담을 받거나 다른 형태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을 때 편안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쉼터 역량은 사회복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다양하다. 인신매매 피해자 전용 쉼터를 갖춘 국가가 있는가 하면, 폭력 피해자를 위해 세워진 쉼터에 인신매매



주의

쉼터: 쉼터와 보호소의 위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철저하면서도 주변의 이목을 끌지 않는 보안 대책을 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에 위치해야 한다. 쉼터 및 쉼터 위치와 관련된 정보는 인신매매자의 위협과 보복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밀사항으로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인신매매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나 비정부기구의 대표 혹은 지원 제공자로 가장하여 쉼터에 접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쉼터에 데려오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심지어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속인다고도 알려져 있다. 인신매매자가 이렇게 쉼터에 접근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다.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게 한 국가도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없을 경우, 쉼터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가진 비정부기구에 의존하기도 한다. 또한 보안이 잘 된 아파트를 보호소로 제공하는 국가도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든지 쉼터 혹은 보호소는 안전하고 보안이 확실한 지역에 위치하여 인신매매자나 보호망 외부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쉼터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보안과 보호
- 식량과 숙박
- 특별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은 지원 제공자가 하루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환경
- 기본적인 의료 지원 (만약 쉼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심리사회적 지원과 종합적인 의료 지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용 쉼터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쉼터 혹은 보호소는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고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호망 내의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쉼터 거주 기간은 피해자의 회복 속도와 출신 지역으로의 귀환 가능성에 따라 다르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보안상의 위협이 있거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안전한 본국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귀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출입국 서류를 발급하고 귀환국의 피해자와 피 연계기관과 접촉하여 귀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성 및 안녕이 언제나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한다.

6단계 : 귀환

인신매매 피해자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국내, 국경, 국가 간 이동하는 동안 긴밀하고 지속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지원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가 아니라면, 귀환 과정에 걸쳐 피해자와 동행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육로 혹은 해상으로 이동 시) 항공기를 이용해 귀환할 때에는 피해자를 탑승 순간까지 경호해야 하며, 경유지와 도착지에는 피해자를 맞이하고 동행할 사람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 과정은 피해자가 도착지의 담당기관에 연계되고 추가적인 지원을 거절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²

인신매매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복차림의 사법요원이 귀환하는 피해자를 경호해서는 안 된다. 체계적인 자발적 귀환은 강제 이송이나 추방이 아니다.



주의

쉼터에는 감금시설을 연상시키는 빗장을 지른 창문이나 뾰족한 철사가 달려 있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한다.



주의

특히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에게는 전체 이동 과정에 걸쳐 경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관련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연락을 취할 때에는 국가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법과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서류가 필요한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세부사항, 즉 자신이 인신매매된 이주자라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한 정보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귀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발성 - 목적국 혹은 목적지로 지정된 도시에 피해자의 영구 거주를 허가하는 법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인신매매자의 보복이나 출신국 정부 당국의 징벌 조치 위협³과 같이 피해자가 귀환하지 않으려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보호와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귀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가 느끼는 보복 위협의 근거가 타당하다면, 그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서류 준비 - 신분을 증명하는 것은 국가 간 이동 시 필수적인 사항이며 귀환과 재통합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변경, 파기, 기한만기, 분실 등의 이유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피해자가 많으므로 가족이나 국가 기관 혹은 영사관/대사관 직원들과 연락하여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이동 경로에 따라 경유 비자 혹은 기타 임시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경호 - 귀환의 전체 과정은 피해자의 안전과 존엄성 보장을 위해 보호망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필히 준수되어야 한다.

- **육로 이송:** 쉼터 혹은 보호소에서부터 최종 목적지나 지정된 피 연계단체 및 기관에 인도될 때까지 피해자를 경호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동반인 없이 남겨두면 안 된다. 국내 귀환의 경우(집, 마을 혹은 거주 도시까지 이동할 경우), 담당기관은 가족, 비정부기구, 지역 사회복지 대표와 같이 사전 심사와 확인을 거친 일행이 있는 이웃 지역까지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육로로 귀환하는 경우, 이송은 보통 지정된 지역 기관까지 이루어진다. 지정 기관은 피해자가 고향에서도 지원과 쉼터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최종 목적지까지 피해자를 이송시키기도 한다.
- **항공 이송:** 쉼터 혹은 보호소에서부터 항공기 출발 지점까지 피해자의 이송을 경호한다. 안전하고 순조로운 수속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 항공사 탑승수속, 세관통과, 입국심사, 탑승구 체크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경호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항공사에 이동자⁴가 특별 지원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는 것과 경유지와 최종 목적지에서 지정된 사람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보통 사전 심사를 거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의 직원이거나 정부 복지 관련 직원이다.)

도착 후, 피해자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최대한 신속히 연계되어야 한다. 도착국의 보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확보되는지에 따라 이 절차는 비행기 입구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혹은 세관 수속과 입국심사를 마친 직후 진행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공항에 도착하고 빠져나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쉼터나 집까지의 이송이 원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고려사항 - 귀환 확인 목록 만들기 (확인 목록은 이동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 이동자는 출발을 위한 적합한 서류를 갖추었는가? 즉, 비자나 허가 받은 출입국 서류를 출신국에서 발급받았는가?
- 이동자는 경유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직항 노선이 불가능할 경우)
- 이동자는 항공 혹은 육상 이동 중 특별히 주의할 기온여야 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가?
- 이동자는 귀환하는 동안 음식, 물, 기타 잡비에 지출할 경비가 있는가?
- 이동자는 여행 서류 원본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경우에 대비해 사본을 갖고 있는가?
- 이동자는 여행 경로의 세부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가? 경유하는 동안 지원이 필요할 때 연락해야 하는 사람과 연락처를 알고 있는가? 도착 후 만나게 될 지원자의 이름과 정보도 알고 있는가?
- 필요한 경우, 피 연계기관과 경유 지원이 준비되었는가?
- 피 연계기관과 경유지 지원 담당자는 최신 항공 정보를 받았는가? 정보 접수를 확인했는가?
- 피해자가 특정 날짜에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경유지에서 환승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우발적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는가?
- 이동자가 출발했다는 사실이 경유지의 지원기관과 피 연계기관에 전달되었는가?

7단계 : 재통합

인신매매 피해자를 성공적으로 재통합시키기 위해, 피해자가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재통합은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 귀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재통합 과정이 성공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실질적인 재통합 과정은 귀환 이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재통합은 피해자가 사회에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피해자를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만드는 상황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는 상관없이 재통합 과정은 피해자가 심리적, 정신적으로 보다 굳건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인신매매로 인한 외상을 극복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지극히 일반적이며, 인신매매된 이주자가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금전적인 이유로 고향을 떠난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는 자신을 실패한 존재로 인식하고, 이는 본인의 안녕에 관한 생각을 잊게 하여 자존감을 낮춘다. 따라서 인신매매 피해자는 자



기억하세요

경호원은 항공기가 예정된 목적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출발할 때까지는 공항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는 비행기 출발이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승객들이 다시 내려야 하는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기억하세요

성인 피해자의 경우,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 지원만 선택하고 귀환과 재통합 지원은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보안 문제가 없다면, 자기 결정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 피해자는 더 이상의 괴롭힘이나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귀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안 위협이 알려지거나 확인된 경우라면, 피해자는 어떤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지에 대해 상담 받아야 한다.

주의

타당한 의학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혹은 아동의 경우가 아니라면), 민간 항공기를 타고 귀환할 때 탑승 경호 지원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항공기 여객실은 안전하고 폐쇄된 곳이며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을 책임질 승무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경유지 혹은 도착지에서 피해자를 맞이해야 한다.

주의

대부분의 경우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취업 가능성이 낮은 가난하거나 소외된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발전을 위한 이주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통합 지원만으로 저소득이라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기반을 개발하는 것은 역량을 강화시키고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재(再)피해자화를 막을 수 있다.

신의 무지함과 수치심, 자기혐오, 무가치함과 같은 감정으로 인해 고통 받는다.

심리상담, 생활기술 교육, 집단치료와 기타 심리사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복을 도모할 수 있다. 상담사는 인신매매가 피해자의 정신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상담을 받고 특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과 자존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자존감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다른 활동을 제공하여 인신매매에 취약하도록 만든 원인들을 제거하도록 한다.

그 밖의 활동에는 검증되지 않은 직업 알선자와 중개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활동,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에 초점을 맞춘 생활기술 교육,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의 출신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비교적 해결이 수월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재통합을 위해서 혹은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귀환 전에 많은 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재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귀환 전 상담 및 지원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신국 내 재통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간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에게 언제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귀환과 재통합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망 구조는 국가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재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사회복지 기관이 포함된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심리사회적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직업 교육 제공
- 동료 지원
- 비정규 교육 제공
- 소액대출 혹은 반환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soft loan)
- 학교 교육 지원

귀환 전 서비스 제공과 피해자 연계 과정의 확립에 대하여 다양한 참고자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과 경험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본 지침서의 참고문헌과 출처 부분에서 이러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평가 도구

사례 파일

자료 수집과 평가에 있어서 구조적인 틀을 세우고 귀환과 재통합 지원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사례 파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파일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일관되고 표준화된 방법을 통해 중요한 정보와 피해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귀환과 재통합의 연결망에 있는 다양한 피해자 지원단체로 전달한다. 2)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한다. 3) 모니터 및 사후 점검을 위한 참고 기록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사례 파일은 제공된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재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례 파일의 정보는 귀환 전까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 기관으로부터 귀환 이후 재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위 세 단계에서 개괄한 사항과는 별도로, 지원 기관은 사례 파일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담사나 심리학자를 통해 평가된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회복에 관한 정보
- 사회복지사나 사례 관리자의 정기적인 연락이나 방문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의 전반적인 안녕과 소재지에 관한 정보
- 재통합 상황에 대한 정보(예, 학교 교육의 지속 여부, 취업 여부,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 인신매매 경험에 대한 최근 상황

재통합 담당기관의 피드백을 통해 귀환 전에 제공된 지원이 피해자 회복 및 지역사회로의 재정착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존감 증진 노력이 귀환 초기의 불안감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귀환 전에 이러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피드백을 통해 귀환 후 피해자가 경험하게 된 다양한 어려움이 송출국에 보고된다. 이는 송출국이 피해자를 보다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응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쉼터가 직업기술 교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실적으로 활용가능한 직업의 유형에 대한 피드백이 교육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특히 국경 간 인신매매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유용하다.

주기적인 사례 검토

또 다른 효과적인 평가 방법은 피해자 귀환 지원 이후 주기적으로 사례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다. 관련 담당기관은 피해자 식별부터 지원기관으로의 연계, 쉼터 제공, 귀환 및 재통합 지원까지 전반적인 사례 관리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처음 도표 그리기 단계에서 파악한 구조를 기준으로 지원 과정을 분석한다. 담당기관은 각각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전에

주의

개인정보(사생활)에 관한 법률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사례 파일의 내용과 이용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의논한 후, 지원책임 기관이 보호망 내부 기관으로 확인되었다라도 사례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기 전에 피해자와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무엇이었는가? 재통합 과정을 정교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가? 과정중에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러한 피드백이 일단 확인되면 전반적인 과정을 정교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관계 기관이 있는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조직의 부서와 기관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미 한정된 예산과 재정적·인적부족으로 인해 업무간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런 서비스를 조직의 공식 임무이자 중점 업무로 여기는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종교 단체, 기타 기관도 종종 있다. 이러한 기관은 특히 심터 지원, 심리 사회적 상담, 기타 형태의 상담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보완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IOM은 세계적인 사무국 네트워크를 통해 인신매매된 이주자의 귀환과 재통합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그러므로 정부기관과 기타 관계 기관 간에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타 관계 기관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해 정부정책과 절차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력 과정을 통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개발된다면, 피해자 지원을 최대화하면서도 중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보호망을 유지하고 인도주의적 원칙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효력이 있는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에 공조 계획의 틀을 기술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예로는 첨부자료 I 을 참조하도록 한다.

주 /

- ¹ 인신매매가 국가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국가 간에 발생한다.
- ² 국가 간 이동 시, 이는 최종 목적지의 공항을 의미한다.
- ³ 경우에 따라 인종적·종교적·정치적·민족적 박해 및 기타 형태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주할 목적으로 중개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면접이나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안전한 보호소로 연계하여 적당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 ⁴ 이동자의 신분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동자가 특별 보호 하에 이동 중이라는 점과 지정된 직원에게 인도되어야 한다는 점만 명시하면 된다.

1. 인신매매 문제에 관여하는 각 주요 기관의 회의를 소집하도록 한다. 회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귀환과 재통합 구조의 개발에 관한 의견서를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논의해야 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비정규 이주 현황 및 인신매매 가능성
- 이주자와 관련된 국가적 책임
- (연구 논문이나 사례 분석에 나타난) 국내 인신매매 현황
- 과정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
- 제안된 실행 계획

2. 3장에 나와 있는 7단계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 실행 상태에 대한 초기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 이행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지 결정한다.

3. 검토와 해결이 필요한 정책적 변수 혹은 운영 쟁점을 규정한다.

4.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떤 의식 함양 대책이 필요한지 개발한다. 필요한 대책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인신매매, 인신매매방지정책서, 관련 국내 법제를 주제로 정보 브리핑 실시
- 인신매매의 정의, 인신매매된 이주자와 밀입국한 이주자의 차이점에 대한 교육
- 구금시설에 있는 이주자에 대한 사례 검토를 통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 찾아보기

5. 위 사항과 관련되어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일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6.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을 세부적인 일 정표에 맞추어 설정한다.

7. 주기적인 검토 및 조정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실행 계획이 완성되면,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다. 이때, 다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대화

기관 간에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가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신매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권한을 가진 여러 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특정 사법 권한이 있는 법 집행 기관

은 이주국이나 세관과 같은 법 집행기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과 외교부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간의 협조, 국제기구와 기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조 또한 필요하다.

정해진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원이 제공되는 동안 특정 기관이 전 과정을 독점하지 않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전체가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운영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 혹은 태스크포스 결성을 통한 대화 절차의 공식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화 절차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신매매 사례를 처리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운영상 공조가 결렬될 수도 있고, 인신매매 방법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사회·정치적 환경이 변하는 복잡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견해와 입장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각 모임의 회의록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논의사항을 제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추가적인 기준과 진행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¹

구조 설계 기간

효과적인 귀환과 재통합 구조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각 기관이 주요 이주법과 기타 관련 법률 및 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예외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나 이주법 위반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 해결책은 귀환과 재통합 과정의 확립에 필요한 제도적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과정을 제도화할 때 필요한 정책과 법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이다.

귀환 과정에서 앞서 설명한 원칙을 구체화시켜 적용한다면, 관련 정책과 법적 구조가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 법과 정책상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 표준운영절차(SOP)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운영절차는 법적 체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인증한다.

실행의 장애물

인신매매 사례 관리 및 공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은 이주 범죄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는 기존 이주법이나 기타 법제도 그리

기억하세요

협력기관들이 인신매매 방지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서로 완전히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차가 있다 하더라도 협력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모색할 수 있다.

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국가 정책의 부재이다. 국내 법률에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면 법 집행 기관, 지원 제공기관 및 기타 기관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법적 의무를 방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주법에 따라 인신매매된 이주자가 불법 행위를 했음이 밝혀진다면, 이주자를 구금 상태에서 구출해 정부 혹은 비정부기구의 쉼터로 옮기는 것은 비정규 이주자를 돕고 선동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있다. 태국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 양해각서에는 이주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쉼터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며 절차상의 공조에 대한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민간 경찰과 이주 당국 모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경찰국장 등의 고위 관리가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첨부 자료 I 참조)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아직 이주법이 개정되지 않아 인신매매된 이주자의 독특한 상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쉼터나 기타 지원을 제공하는 데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누가 도울 수 있는가?

전 세계적 문제인 인신매매는 지난 10년간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어 왔다. 많은 정부들이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집된 사례들과 그로 인한 경험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수많은 국제기구, UN 산하 기관, 비정부기구 및 기타 시민사회단체들이 인신매매 문제의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면서 대응책 개발을 돕고 있다. 각 기관은 서로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자원과 역량 모든 면에서 인신매매 대응책 개발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IOM은 전 세계의 이주 문제에 대응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분야와 정부와의 협력 하에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다. IOM은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사무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50년 이상의 이주자 운송 지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귀환과 재통합 문제 지원에 특히 적합하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심리사회적 지원, 역량강화, 쉼터 관리, 대중 정보 및 귀환과 재통합과 관련된 인신매매 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IOM은 자원과 기타 자료들을 제공하여 협력한다.



NOTES: _____

주 /

¹ 국제이주기구(IOM), 『IOM 인신매매 방지 교육 지침서: 협력과 네트워크』, 미출간;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Counter-Trafficking Training Modules, Cooperation and Networking, IOM, Geneva, 2006



NOTES: _____

5장 돌아보기

PART FIVE LOOKING BACK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전문화된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구축하였는가에 따라 그 가치와 효력이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귀환과 재통합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특정 기준이나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지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기로 한다.

지표(Indicators)

지표란 무엇인가?

지표는 양적 또는 질적 기준으로 성취, 변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간단하고 믿을 만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운영, 서비스 및 과정의 특성과 실행 결과를 분석, 평가하는 수단이다. 또한 성과를 측정, 감독, 평가, 개선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성과 지표는 특히 개입의 결과를 검증하거나 계획한 바와 비교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이다.

성 인지 지표는 주어진 맥락 속에서 특정 기간 동안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측정함으로써 성 평등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지표가 왜 중요한가?

성과 지표는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의 성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수단이나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지표는 개입 종료 시에도 매우 중요한데, 설정한 목적과 목표에 비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이자, 경우에 따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상세한 초기 데이터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입을 통해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더욱 장려하는 등의 옹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서비스 제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점점 늘어가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역량과 자원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동시에 지표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양적·질적 정보는 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개입 계획과 지원 제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지표는 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 실행 결과를 측정해보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양적이든 질적이든, 지표는 개입에 관련된 실행자, 수혜자, 기부자의 의견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돕는다.

종종 지표를 결과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지표는 개입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는 프로젝트 활동으로 생산된, 측정 가능한 직접적 결과물이다. 반면, 지표는 사업의 목표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어떻게 지표를 개발하는가?

개입의 목적과 예상결과 그리고 개입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표가 선택될 수 있다. 이때, 지표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며, 검증가능해야 한다. 또한 지표는 취할 수 있는 정보, 역량과 자원, 적절한 검증 수단을 통해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관계자들과의 상담이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들은 직접 기준 설정을 지원할 수 있고, 취약점이나 외부 방해 요인에 대해 조언할 수 있으며,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스마트(SMART)지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구체적일 것(Specific): 규모와 시간 면에서
- 측정 가능할 것(Measurable): 목표 실행 결과에 따른 변화를 구체화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 달성 가능할 것(Attainable): 지표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하고 접근 가능할 것
- 관련성이 있을 것(Relevant): 외부 요소의 영향보다는 개입의 영향을 반영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 추적 가능할 것(Trackable): 지표는 현재 사용 가능하거나 사업 관리의 일부로 수집될 자료들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성 인지 지표를 위해 최소한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귀환과 재통합 과정 평가하기

평가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도록 한다. 귀환과 재통합 과정의 원래 목표는 무엇인가? 단순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신매매된 이주자 지원에 대한 운영상의 지침을 확립하는 것인가?

만일 지원 절차가 고립된 몇몇 인신매매 피해자의 즉각적인 귀환을 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면, 해당 피해자를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것만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지원 목적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 향상시켜 피해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인신매매된 이주자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인신매매 방지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이를 장기적인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성공 여부는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 1) 제도적 구조 평가 - 투명한 국가 정책 및 기준의 확립, 지원 제공 역량의 향상
- 2)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결과 평가 - 귀환과 재통합에 대한 제도적 접근

이것이 성취되었는가?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혹은 지표는 다음을 포함한다.

제도적 구조 평가

- 국가위원회, 혹은 유사한 공조 집단의 설립
- 국가적 실행 계획 초안 잡기
- 피해자 지원 대책의 주요 윤곽을 명확하게 표현한 인신매매 국내법의 초안 작성 또는 개정사항 이행, 예를 들어
 - 피해자를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지하는 피해자 친화적인 절차
 - 이주자 가운데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국가별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와 대책
 - 피해자를 구치소, 감옥, 구금시설 및 기타 유사 환경에서 구출하여 보호 시설로 옮길 수 있게 하는 절차상 협약
 - 피해자 친화적인 정보 수집 방법
- 사법기관, 사회복지부, 기타 관련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국가 정책의 초안 잡기
 -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계자를 위한 행동 기준 개발
 - 피해자의 식별, 보호(쉼터제공), 귀환과 재통합을 촉진시키는 기관 사이의 협력 증진을 위해 표준운영절차(SOP)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 인신매매자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절차체계에 대해 국가와 양자 간 합의 혹은 양해각서를 채택한다. 이러한 규약이 대략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인신매매의 정의
 - 관련 부서와 기관
 - 절차 기준과 지원 기준
 -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포함한 정보교환 프로토콜
 - 보호,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협력



주의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략적인 행동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하다. 행동 기준은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할 것과 가장 높은 수준의 품행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피해자의 사회 재통합 결과 평가

- 귀환한 피해자의 연계 및 지속적인 지원 제공을 위하여 목적국 내 지원 제공기관과의 연계체계가 형성되었는가?
- 재통합 경과를 측정하기 위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가? 연계, 귀환, 재통합 과정에서 공조가 강화됨에 따라 재통합 성공 가능성이 증대되었는가? 다음 사항으로 인해 재(再)인신매매가 감소되었는가?
 - 귀환 후 상담과 의료 지원
 - 학교 교육, 직업 교육, 취업으로의 연결
 - 담당 사회복지사 혹은 지원 제공자에 의한 주기적 사후관리

성공 여부 판단하기

이와 같은 기준 확립을 넘어서, 의도한 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데 실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재점검하는 것과 같다.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귀환과 재통합의 목표는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주자에게 피해자 중심의 인도주의적 귀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측면, 다시 말해 피해자의 지원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신매매된 이주자를 범죄자가 아닌 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비정규 이주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추방 절차 기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예외로 하는 작업이다. 원칙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구금시설로부터 구출
-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쉼터로 이송
- 국외추방이나 강제추방의 대안으로 시기적절한 자발적 본국 귀환 촉진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재통합 이전과 이후에 인도주의적 원칙, 국내 법률 및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는가?
- 인신매매된 이주자는 자신의 권리와 선택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가?
- 전 과정에 걸쳐 사례 비밀보장과 이주자 보호가 이루어졌는가?
- 자발성의 원칙이 지켜졌는가?

만일 이 기본 원칙이 장기적인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졌다면, 전반적인 목표는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동일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끊임없는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론

귀환과 재통합은 전반적인 인신매매 방지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지침서에서는 피해자 귀환과 재통합 과정을 제도화할 때 필요한 주요 요소를 개괄하였다. 우리는 본 지침서가 인신매매 피해자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귀환과 재통합의 대응 방식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양한 관련 부서의 관계자를 위한 교육 과정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실제적인 조연을 통해 양해각서의 내용을 현황에 맞게 새로 수정하고 적절하게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해결책 마련을 위한 부위원회는 교육 과정에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였고, 첫 번째 양해각서 실행자들의 의견을 검토하면서 약 1년에 걸쳐 모든 관련 당사자와 논의하고 협의하여 이전보다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두 번째 양해각서를 마련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법무부 장관, 사회개발과 인간안보부, 외무부, 노동부 및 공중보건부의 사무차관들, 경찰청장, 비정부기구와 참관인이 서명하였다.

2.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로 분류된 아동과 여성

2.1 피해자로 인정되는 아동과 여성은 개인, 집단이나 조직에 의해서 기만, 협박, 무력, 권력 남용 혹은 기타 형태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알선, 구매, 거래, 이동, 은닉/인수, 감금, 수용되거나 숨겨진다. 이상의 행위가 태국 내에서 발생했느냐 혹은 국외에서 발생했느냐와 관계없이, 아동과 여성을 강제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불법적인 행위(예들 들어 성적 서비스, 감금된 상태에서의 행위, 강제적이고 학대적인 고용, 억압 혹은 불공평한 임금, 강제구걸, 비윤리적인 대우 등과 같은 기타 형태의 노동 착취)를 수행하거나 이에 따르도록 했다면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2.2 여아와 남아 혹은 18세 미만 여성이 2.1 조항에 기술되어 있는 행위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한다. 범죄 행위에 동의하거나 공모한 사실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네 가지 유형

인신매매 피해자 유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뉜다.

- 3.1**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태국 아동과 여성,
- 3.2** 불법적으로 입국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 아동과 여성,
- 3.3** 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 아동과 여성,
- 3.4** 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타 국적의 아동과 여성이다. 아동과 여성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할지의 여부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법에 따라 재판장은 해당 아동과 여성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증거 및 증언을 반드시 참작해야 한다.

4.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태국 아동 및 여성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태국 아동과 여성이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거나 외국으로 팔려나가 착취당한다면, 형법,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4.1 정확상 아동이나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본인 요청 시 경찰은 관련 공무원이나 대표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나 여성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 혹은 기타 장소에서 구출되었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조속히 인터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², 1997년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인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법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 측과 조정해야 한다.

4.2 아동이나 여성이 알선, 동반, 매매, 거래, 이동, 은닉/인수, 감금, 구금되거나 이들에게 기만, 위협, 무력 사용, 권력 남용 및 기타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경찰은 아동과 여성 인신매매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인신매매업자, 감독자, 관리자, 통제자, 그리고 아동과 여성에게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이윤을 창출한 자도 범죄자에 포함된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복지법,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돈세탁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업소에서 18세 미만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범죄자로 간주한다.

앞서 기술된 행위를 한 자를 기소하고자 할 때 아동의 연령은 범죄가 처음 발생한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설사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범죄가 밝혀졌다고 해도, 범죄 발생 시기에 아동이 18세 미만이었다면 범죄자는 기소될 것이다.

4.3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11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인터뷰가 끝나면 이들을 24시간 내에 사회개발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 센터,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관으로 옮기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 부서는 아동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³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인터뷰를 실시한 이후에 그들이 직업 훈련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희망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뷰가 완료되지 않았고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 10조와 11조에 근거한 기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여성은 사회개발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 센터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관으로 옮겨져야 한다.

4.4 아동이나 여성에게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신분증이 가짜 혹은 위조되었을 경우, 또는 기관이 발급한 신분확인서류를 임시 신분증으로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해당자의 개인 등록정보와 나이를 주민등록부에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4.5 아동이나 여성이 본인이 18세 이상임을 주장하지만 신분증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공식 서류가 없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관이나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치아 확인 혹은 기타 신체검사와 같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 (국제 사례일 경우) 해당자가 18세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검사 절차를 부서에서 계획하여 진행한 경우 수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6 사회개발복지부 담당자는 인터뷰 초기에 아동이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를 얻고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증거로서 수집한다. 또한 이 정보를 범죄자 기소에 관련된 수사의 일부로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4.7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여성이나 아동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있는 관계자가 예비 인터뷰, 수사,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사관은 사회개발복지부나 비정부기구의 담당자에게 파견이나 공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4.8 여성과 아동이 사회개발복지부의 보호를 받는 동안 부서 담당자들은 이들이 본래 주거지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한 숙소, 음식, 의복 등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4.9 수사기관 혹은 법정의 권한 하에, 사회개발복지부가 아동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공간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시설을 구급시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4.10 태국 아동과 여성이 인신매매되거나 외국으로 수출된 경우, 목적국 내 태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이들을 구출하여

태국으로 되돌려 보냈다면 외교부는 이민국, 범죄퇴치부, 사회개발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에게 송환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이민국과 범죄퇴치부는 정보를 보고받는 즉시 4.2조항에서 4.9조항까지 언급한 내용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태국에 불법으로 입국해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 아동과 여성 및 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이후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외국 아동과 여성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형법, 1979년 이주법, 1996년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기타 관련법이 다음과 같이 운영될 것이다.

5.1 정확상 아동이나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 요청 시 경찰은 관련 공무원이나 대표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나 여성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 혹은 기타 장소에서 구출되었다면 이들을 증인으로 조속히 인터뷰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인의 조기 증언을 법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 측과 조정해야 한다.⁴

5.2 여성이나 아동이 알선, 동반, 매매, 거래, 이동, 은닉/인수, 감금, 구금, 숨김을 당하거나, 이들에게 기만, 위협, 무력 사용, 권력 남용 및 기타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경찰은 아동과 여성 인신매매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인신매매업자, 감독자, 관리자, 통제자, 그리고 아동과 여성에게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이윤을 창출한 자도 범죄자에 포함된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복지법,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돈세탁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범죄자로 간주한다.

앞서 기술된 행위를 한 자를 기소하고자 할 때 아동의 연령은 범죄가 처음 발생한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범죄가 밝혀졌다 해도, 범죄 발생 시기에 18세 미만이었다면 범죄자는 기소될 것이다.

노동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노동법 조항에 따라 관련

담당자가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이때, 관련기관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명된 외국인 아동과 여성은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3 외국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끝나면⁵, 수사관은 1979년 이주법 54항에 따라 당국에 이들에 대한 면제 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1979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당국은 외국 아동이나 여성을 사회개발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 쉼터,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관으로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개발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 아동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⁶

5.4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명서류의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의심될 경우,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피해자가 출신국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확인 결과는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5.5 외국 아동이나 여성이 자신이 18세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신분증이나 신분 확인을 위한 공식 서류가 없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신분 확인을 위한 서류가 가짜거나 위조되었거나 당사자에게 발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또는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사관이나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치아 확인 혹은 기타 신체검사와 같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국제 사례일 경우) 해당자가 18세 이상인지 판단해야 한다. 부서가 계획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5.6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외국 아동이나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과 관련된 예비 인터뷰를 상세히 진행한 후,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증거로서 수집한다. 또한 범죄자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수사관과 협력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귀를 위한 예비 과정의 일환으로 그리고 해당 아동과 여성이 태국에서 성매매 및 기타 업종에 고용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사건을 조사하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아동과 여성의 심리적·사회적 배경을 밝히도록 한다. 이러한 사실과 배경정보는 출신국에 전달하여 아동과 여성의 귀환 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7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여성이나 아동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있는 관계자가 예비 인터뷰⁷, 수사,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사관은 사회개발복지부나 비정부기구의 담당자에게 이들의 파견이나 공조와 관련하여 연락을 취해야 한다.

5.8 예비 인터뷰, 조사,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하며 외국 아동 혹은 여성은 출신국으로 즉시 귀환되어야 한다. 범죄자 추적에 필요한 경우 아동 혹은 여성의 체류를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외국 아동이나 여성은 사회개발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 쉼터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5.9 여성과 아동이 사회개발복지부의 보호를 받는 동안 부서 담당자들은 이들이 본래 주거지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한 숙소, 음식, 의복 등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공중보건부는 의료 지원 감독과 전염병 방지의 의무를 위임받는다.

5.10 수사관 혹은 법정의 권한으로, 아동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개발복지부가 이용하는 공간 혹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사립 복지시설을 구금시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5.11 태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아동과 여성의 국적을 알 수 없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의 주거지나 소재지를 고려해야 한다. 출신국의 대사관이나 정부 측이 당사자의 주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불법으로 입국한 아동과 여성의 주거지나 소재지를 확인할 때, 정부 당국과 담당자는 모든 증거를 모으고 해당자를 인터뷰하고 증언을 기록하여 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탐색해야 한다.

5.12 사회개발복지부, 지방 경찰, 이민국이나 국경 검문소, 비정부기구 및 외교부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정보나 범죄자를 색출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증거 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출신국에 전달되어 범죄자를 기소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이는 출신국 내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차단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5.13 이민국이나 국경 검문소, 사회개발복지부, 외교부 및 비정부기구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아동과 여성을 출신국으로 귀환시켜야 한다. 출신국의 대사관, 이민국, 정부기관, 비정부기구가 귀환자를 인계받고, 귀환자가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쓰는 데에도 함께 노

력해야 한다. 수사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세부사항과 정보 제공해야 한다.

6. 태국 거주 중에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 타국적의 아동과 여성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

인신매매 피해자 아동이나 여성이 내무부에 등록되어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⁸ 15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해 있다면, 형법, 1996년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기타 관련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6.1 정황상 아동이나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 요청 시 경찰은 관련 공무원이나 수사를 맡고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이나 여성이 성매매업소나 유흥업소 혹은 기타 장소에서 구출되었다면 이들을 조속히 증인으로 세워 인터뷰해야 한다. 또한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인의 조기 증언을 법정에 신청할 수 있도록 검사 측과 조정해야 한다.⁹

6.2 여성이나 아동이 알선, 동반, 매매, 거래, 이동, 은닉/인수, 감금, 구금, 숨김을 당하거나, 이들에게 기만, 위협, 무력 사용, 권력 남용 및 기타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었을 경우, 경찰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인신매매업자, 감독자, 관리자, 통제자, 그리고 아동과 여성에게 타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외설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의 불법적인 이윤을 창출한 자도 범죄자에 포함된다. 또한 성매매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복지법,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돈세탁 방지 및 억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성매매업소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도 범죄자로 간주된다.

앞서 문단에 기술된 행위를 한 자를 기소하고자 할 때 아동의 연령은 범죄가 처음 발생한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 범죄가 밝혀졌다 해도, 범죄 발생 시기에 18세 미만이었다면 범죄자는 기소될 것이다.

6.3 피해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인터뷰가 끝나면 경찰은 이들을 사회개발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시설, 복지 쉼터 혹은 부서가 허가한 사립 복지기관으로 보내야 한다.¹⁰

6.4 (킬러로 된)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명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가 개인 기록과 신원 등록을 내무부에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는 수사관에게 전달한다.

6.5 외국인 아동이나 여성이 자신이 18세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신분증명서류가 없을 경우, 또는 신분증명서류가 가짜거나 위조되었거나 당사자에게 발급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될 경우, 또는 해당자가 18세 이상이 아님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사관이나 사회개발복지부의 담당자는 치아 확인 혹은 기타 신체검사와 같은 의학적 검사를 통해 아동이나 여성의 실제 나이를 파악하고 확인해야 한다. 부서 담당자가 계획하여 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6.6 사회개발복지부 담당자는 피해자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사건과 관련된 예비 인터뷰를 상세히 진행한 후, 얻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증거로서 수집한다. 또한 이 정보를 범죄자 기소에 관련된 수사의 일부로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6.7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여성이나 아동과 관련된 일에 경험이 있는 관계자가 예비 인터뷰¹¹, 수사,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사관은 사회개발복지부나 비정부기구의 담당자에게 파견이나 공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6.8 예비 인터뷰, 조사, 법정에서의 증인 심문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경찰과 사회개발복지부 담당자, 비정부기구는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지정된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9 여성과 아동이 사회개발복지부의 보호를 받는 동안 부서 담당자는 이들이 본래 주거지로 이송되기 전까지 안전한 숙소, 음식 및 의복 등과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6.10 아동과 여성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그 행위를 목격했다면, 관련기관은 아동과 여성을 증인으로 보호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해야 한다.

7. 사회개발복지부 지방 사무소의 권한과 책임

사회개발복지부 지방 사무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사회개발복지부의 권한을 이행한다.

그러나 개념과 실질적인 절차상의 부조화가 향후 계속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아동과 여성 인신매매

해결에 관여하는 관련기관 간에 적절한 공동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립시킨다.

관련기관은 이 양해각서 조항에 의거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 보조를 예산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개발과 인간안보부의 상임 비서실에 추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관련기관은 이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내부 규정을 세운다.

이 양해각서는 2003년 3월 24일에 조인되었다.

서명:

Mrs. Panit Nitithanpraphas
사회개발과 인간안보부 사무차관

Mr. Pensak Chalaraksa
외교부 사무차관

Dr. Thawat Soontaracharn, MD
공중보건부 사무차관

Mr. Thapabutr Chomsewi
노동보호복지부장, 노동부 사무차관 대행

Mr. Wichian Wiriyaprasit
법무장관
경찰국장(Sant Saruttanonda)
경찰청장, 태국 왕립 경찰

증인

서명:

Mr. Gamini Abeysekera
유엔아동기금(UNICEF)

H.E. Mr. Miles Kupa
호주 대사관 특명대사 및 전권위원

Mr. Farooq Azam
국제이주기구(IOM)

Mr. Herve Berger
국제노동기구(ILO)

Ms. Edelweiss F. Silan
아시아 아동노동자(CWA)

Mr. Philip Marshall
대 메콩강 지역 내 인신매매에 관한 유엔 관계부처 합동 사업 (UNIAP)

Miss Supattra Khattiya-aree
F.X.B 재단

Mrs. Saisuree Chutikul
아동과 여성의 인신매매 해결책 조정을 위한 부위원회 국장

Mrs. Srisak Thai-aree
외국 아동 조정위원회 국장

Mrs. Siriporn Skrobanek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네트워크

주 /

¹ 자신이나 타인의 만족을 위해 혹은 부적절한 행위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아동이나 여성을 구매하고, 판매하고, 데려오고, 동반하고, 알선할 때, 그리고 아동이 매매되거나 구걸을 강요받거나 비인도적인 노동 환경에 처하게 될 때의 범죄를 지칭한다. (1997년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및 억제 방안에 관한 법률과 1997년 형법수정안(제14항)의 원칙과 근거에서 나옴)

² 이는 여성 인신매매 피해자에게만 적용된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에는, 1999년 형사소송법(법령 제20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³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이 실행되어야 한다.

⁴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피해자 아동의 경우, 1999년 형사소송법(법령 제20항)이 시행되어야 한다.

⁵ 이는 1998년 6월 2일자 내무부 법령 제11항에 의거한 직원을 지칭한다. 이 법령 하에서 직원의 권한은, 인신매매 피해자인 다른 아동과 여성을 담당하기 위해 이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⁶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 원칙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⁷ 예비 인터뷰는 MOU 조항1(5)에 명시된 법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피해자인지, 혹은 범죄의 도구/대상으로 취급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⁸ 내무부에 등록되어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고, 중앙등록부서 1995년 3월 31일자 No. Mor Tor 0310/8 문서의 태국 내 소수민족에 관한 추가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범주의 사람은 비태국인으로 규정되지만 태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하이랜드 거주자(파란색 카드 소지) 2. 중국군 퇴역 군인(흰색 카드 소지) 3. 원난 민간 이주자 혹은 중국 허(Haw)족(노란색 카드 소지) 4. 자유 중국 허(Haw)족 이주자(오렌지색 카드 소지) 5. 미얀마 난민(핑크 카드 소지) 6. 미얀마 출신 불법 이주자(오렌지색 카드 소지/영구 거주) 7. 미얀마 출신 불법 이주자(보라색 카드 소지/고용자와 함께 거주) 8. 베트남 난민(테두리가 어두운 파란색인 흰색 카드 소지) 9. 라오스 난민(파란색 카드 소지) 10. 네팔 난민(초록색 카드 소지) 11. 이전 말레이시아 공산주의 반대 세력자(초록색 카드 소지/이전 말레이시아 공산주의 반대 세력자를 위함) 12. 타이루족(오렌지색 카드 소지) 13. 므라브리 사람(파란색 카드 소지/하이랜드 거주자와 동일) 14. 콩 섬에서 내려온 태국의 캄보디아 난민(초록색 카드 소지) 15. 하이랜드 지역 등록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테두리가 붉은 색인 초록색 카드 소지)

⁹ 이는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에게만 적용된다. 피해자 아동의 경우, 1999 형사소송법(법령 제20항)이 시행되어야 한다.

¹⁰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 조항이 실행되어야 한다.

¹¹ 예비 인터뷰는 MOU 조항1(5)에 명시된 법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피해자인지, 혹은 범죄의 도구/대상으로 취급받았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강제징병 (Forced Military Conscription)

전시 상황의 민간인 보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제4차 제네바 협약(The Fourth Geneva Convention)」에 의하면 “점령군은 피보호자에게 자국의 전투 또는 비전투 군대에 복무할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전문 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관련 용어: 소년병, 착취

격리 (Isolation)

격리는 인신매매자가 통제와 강압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분증명서류나 출입국 서류 제거 및 언어적·사회적 고립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통제, 강압, 신분증명서류, 출입국 서류

경유국 (Country of Transit)

이주자가 거쳐 가는 국가, 이주 흐름이 통과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관련 용어: 출신국, 목적국

국내 인신매매 (Internal Trafficking)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기소 (Prosecution)

피고인을 심리하기 위한 형사 소송 절차를 의미한다.³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기소는 법률과 정책 강화, 범죄 처벌 강화, 역량강화, 국내 및 국가 간 협력(예, 비정부기구와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방지, 보호

납치 (Kidnapping)

불법적이고 강제적인 유괴 또는 개인이나 집단을 감금하는 것으로, 보통 납치된 피해 당사자나 그 외 제3자에게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득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형사법 처벌 조항에 의

거하지만, 해적 행위와 같은 특수한 납치 사건은 국제법을 따른다.⁴

관련 용어: 유괴, 모집(강제적인 경우)

노예제 (Slavery)

“한 사람의 소유권에 관한 일부 혹은 모든 권력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행사되는 상태나 조건”(1953년 의정서로 개정된 1926년 「노예제 조약(Slavery Convention)」 제1조) 노예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강압과 통제를 가하거나, 자유롭게 일터를 옮기고 그만 두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예, 전통적인 노예제, 채무노동, 농노제, 강제노동, 의식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노예제 등)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ry.htm>

관련 용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모집 (Recruitment)

인신매매를 이루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전적으로 기만적인 모집,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모집 그리고 강제 모집(유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인신매매, 운반, 착취

모집, 강제적인 경우 (Recruitment, Forcible)

강제로 인신매매 피해를 끌고 간다.

유의어: 유괴

관련 용어: 유괴, 납치

모집, 부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Recruitment, Partia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게 될지는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모집, 전적으로 기만적인 경우

(Recruitment, Fully Deceptive)

인신매매 피해자는 고용과 재정적 이득에 대한 약속에 현혹되고, 인신매매자의 본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완전히 속게 된다.

목적국 (Country of Destination)

이주자가 이동하여 도착하는 국가, 이주 흐름의 목적지가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수용국(Receiving Country)

관련 용어: 출신국, 경유국

밀입국 중개자 (Smuggler (of Migrants))

계약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지된 국경 너머로 사람들을 불법 이송시키는 중개자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방지 (Prevention)

기존의 또는 발생할 문제를 억제하기 위한 방지 행위를 가리킨다.⁵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방지는 정보와 의식증진 활동, 연구, 세미나, 교육, 협력과(지역적, 국내적, 국제적)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기소, 보호

보호 (Protection)

보호는 위험에 처한 개인이 국제협약에서 제시하는 권리와 지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모두 포괄한 개념이다. 보호한다는 것은 개인이 권리를 지니며,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당국에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⁶ 보호는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피해자 보호에는 쉼터 제공, 의료적·심리적 지원, 비자 획득 지원, 자발적 귀환과 재통합 지원, 안전 보장, 국내의 협력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용어: 방지, 기소

비정규 이주 (Irregular Migration)

“당명 신청을 거절당한 자, 강제 이주자, 인신매매 피해자, 환경 이주자, 불법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입국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위조된 문서로 입국하였거나 비자 기한을 초과한 사람”을 말한다. (World Migration, 2003; Skeldon, 2000; Irregular Migration, 1999)⁷ 송출국, 경유국, 수용국의 규제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이동이다.⁸ 비정규 이주에 대해 명확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는 없다. 수용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의 정의는 자국으로의 불법 입국, 자국 내 불법 체류 또는 불법 노동으로서, 이는 해당국의 출입국 규정에 따라 입국, 거주, 또는 노동을 위해 요구되는 허가증이나 서류를 소지

하지 않은 이주자를 의미한다. 송출국의 시각에서 비정규 이주는 유효한 여권이나 출입국 서류가 없이 국경을 지나거나 정부의 출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⁹

동의어: 불법 이주, 밀입국(Clandestine Migration)

반의어: 정규 이주, 합법적 이주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매매의 맥락에서 성적 착취는 성매매, 포르노, 선정적인 춤, 섹스관광, 강제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성, 여성, 아동 모두가 될 수 있다. 성적 착취는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s of 1949)」과 1993년 「여성 폭력 철폐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금지된다.

전문 참조:

<http://www.icrc.org/ihl.nsf/385ec082b509e76c41256739003e636d/6756482d86146898c125641e004aa3c5>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symbol)/a.res.48.104.en)

관련 용어: 착취

소년병 (Child Soldier)

다수의 국제협약은 아동이 무력분쟁에 이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1977년 부속의정서와 「제네바 협약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s to the four Geneva Conventions)」에 따르면, 무력 분쟁에 모집되어 참여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15세이다.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제3조에 의해 아동은 무력분쟁 지역에 “강제 혹은 의무적으로 모집”되어 이용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나이가 2000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선택의정서는 무력분쟁 지역에 아동을 관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전문 참조:

<http://www.icrc.org/eng/war-and-law/treaties-customary-law/geneva-conventions/index.jsp>

<http://www.ilo.org/public/english/standards/relm/ilc/ilc87/com-chic.htm>

<http://www2.ohchr.org/english/law/crc-conflict.htm>

관련 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신분증명서류, 신분증 (Identity Document)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관련 용어: 여권, 출입국 서류

아동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은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당 아동법규에 의하여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 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조) 국제법상 아동은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 대상으로서,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을 모집, 운송, 은닉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간주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전문 참조:

<http://www.unicef.org/crc/>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아동노동,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아동노동 (Child Labor)

“아동노동은 아동의 교육적·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유해한 노동이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해야 한다. 아동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 가능성이 있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에 저해되거나 신체적·정신적·영적·도덕적·사회적 발달에 장애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32조) 국

가는 취업 연령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 및 조건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

전문 참조: <http://www.unicef.org/crc/>

관련 용어: 아동, 착취,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운반 (Transportation)

물건 또는 사람을 운송수단을 통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운반은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육로, 해로, 항로를 이용해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용어: 모집, 착취, 인신매매

유괴 (Abduction)

무력이나 기만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피어내는 행위¹⁰

관련 용어: 납치, 모집(강제적인 경우)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이다. 이주자에게는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만 범죄자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는 이주자 밀입국 중개를 주도하는 조직범죄 집단의 문제를 다룬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이주 (Migration)

국경을 넘거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동을 지칭한다. 이동 기간이나 내용, 원인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인구 이동을 포함한다. 그 예로는 난민, 유민, 실향민, 경제적 이주민의 이주가 있다.¹¹

관련 용어: 비정규 이주, 정규 이주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

“출신국이 아닌 국가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해 온 사람”을 지칭한다.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igrant Workers’ Convention, MWC)」 제2조)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관련 용어: 이주

이주자 밀입국 중개 (Smuggling of Migrants)

“직간접적으로 금전적 또는 기타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해당 국가에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불법 입국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제3조)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관련 용어: 비정규 이주,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인권 (Human Rights)

“인류의 모든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사람들이 당대에 수용되는 가치에 의거하여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이익을 가리킨다.¹² 이러한 권리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에 담겨있으며, 이를 기초로 다른 조약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예,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ICERD)」)

전문 참조:

<http://www.un.org/en/documents/udhr/index.shtml>

인신매매 (Trafficking in Persons)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행위, 유괴, 기만, 사기, 권력의 남용, 상대방의 취약성 악용, 피해자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돈이나 혜택을 제공 또는 수령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인신을 모집, 운반, 이송, 은닉,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는 상호연결 되어있는 행위, 수단, 목적의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을 보충하는 의정서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조직범죄집단에 의해 이용당하면서 발생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다룬다. 이주자는 종종 감금되거나 착취적이고 억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성매매나 그 밖의 위험한 일을 강요받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적인 수입은 조직범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동의어: 팔레르모 의정서

관련 용어: 인신매매,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인신매매 피해자 (Victims of Trafficking)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인 사람(남성, 여성, 아동)

동의어: 인신매매된 자

관련 용어: 아동, 인신매매

인신매매자 (Trafficker (of Humans))

경제적 또는 기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사기, 강압 및 다른 종류의 착취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을 운반하는 자를 지칭한다. 인신매매자의 의도는 사람을 착취하여 이로부터 이득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관련 용어: 인신매매

정규 이주 (Regular Migration)

법적으로 인정된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 이주

동의어: 합법적 이주, 준법 이주(Orderly Migration)

반의어: 비정규 이주

관련 용어: 이주

조직범죄 (Organized Crime)

중앙 조직을 통해 계획되고 통제되는 광범위한 범죄 활동¹³

관련 용어: 이주자 밀입국 중개, 인신매매

착취 (Exploitation)

사물이나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¹⁴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착취에는 성매매에서의 착취 등 기타 성적 착취, 강제노동이나 서비스, 노예제 또는 그와 유사한 관행, 예속 행위 또는 장기적출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제3조) 인신매매자는 오로지 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착취해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거나, 무급 노동 혹은 무료 서비스를 얻고자 한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관련 용어: 강제노동, 가사노예, 성적 착취, 모집, 운반

채무노예 (Indebted Servitude)

노예상태(Servitude)는 ‘종속적이고, 경제적으로 착취적인 노동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¹⁵ 이러한 노예상태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해 채무관계를 이용하는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관련 용어: 착취, 채무로 인한 인적구속, 가사노예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Debt Bondage)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을 담보로 하거나, 누군가의 통제 아래 있기로 약속할 때 발생하는 지위 또는 상황을 지칭한다. 서비스를 통해 채무를 청산할 때에는 서비스의 합리적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이 명시되지 않거나 일의 성격이 모호하다.” (1956년 「노예제, 노예무역, 노예제와 유사한 제도와 관행 철폐에 관한 보충 협약(Supplementary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제1조) 인신매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전문 참조:

<http://www2.ohchr.org/english/law/slavetrade.htm>

관련 용어: 통제, 강압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돈세탁, 부정부패, 조사나 기소의 방해와 같은 초국가적 조직범죄가 연루된 활동 전반과 주요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다룬다.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세부 영역으로서 특정한 고려사항(인신매매, 이주자 밀입국)을 두 개의 보충 의정서에서 다루고 있다.

전문 참조: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관련 용어: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출신국 (Country of Origin)

이주자의 출신 국가, 이주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국가(합법/불법적 이주에 상관없이 해당)

동의어: 송출국(Source Country)

관련 용어: 목적국, 경유국

출입국 서류 (Travel Documents)

타국 입국 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여권, 비자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출입국 서류이다. 특정한 신분증이나 다른 서류를 받는 나라도 있다.

관련 용어: 신분증명서류

통제 (Control)

인신매매의 핵심 요소로서 제한을 가하거나 지시를 내리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¹⁶ 인신매매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예, 신분증명서류 혹은 출입국 서류 압수), 공포심 유발 및 심리적·신체적 폭력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관련 용어: 강압, 채무로 인한 인적 구속, 격리

주 /

¹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accessed October 2004

² Black's law dictionary

³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www.m-w.com, accessed October 2004 (see further as Merriam-Webster Online)

⁴ Feinrider, M., Kidnapping,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No. 8, Human Rights and the Individual In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North-Holland,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5, p.355

⁵ Merriam-Webster Online

⁶ *The Practical Guide to Humanitarian Law* Francoise Bouchet-Saulnier,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2

⁷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nternational Dialogue on Migration-84th Session of the Council* online at <http://www.iom.int/jahia/Jahia/about-iom/governing-bodies/council/84th-session>

⁸ Ghosh, B. “Huddled Masses and Uncertain Shores, Insight into Irregular Mig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Martinus Nijhoff 1998, p.1

⁹ Perruchoud, R., “Migration Terminology”, International Migration Policy and Law Courses, Budapest, Hungary, 1998

¹⁰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accessed October 2004

¹¹ Merriam-Webster Online

¹² Migration Terminology: Concepts and Definitions, Working Draft, IOM

¹³ Black's law dictionary

¹⁴ 위와 동일

¹⁵ Human Rights Watch *Hidden in the Home: Abuse of Domestic Workers with Special Visas in the United States* online at <http://www.hrw.org/reports/2001/usadom/index.htm#TopOfPage>

¹⁶ Merriam-Webster Online Dictionary, www.m-w.com, accessed October 2004 (see further as Merriam-Webster Online)

- Trafficking in Unaccompanied Minors in the European Union, 2002
유럽연합의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2002
- Second Research Report on Third Country National Trafficking Victims in Albania, 2001
알바니아 내 제3국민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2차 조사 보고서, 2001
- Shattered Dreams: Report on Trafficking in Persons in Azerbaijan, 2002
깨어진 꿈: 아제르바이잔 인신매매 보고서, 2002
- Deceived Migrants from Tajikistan: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2001
타지키스탄에서 기만당한 이주자들: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rom the Republic of Armenia: A Study, 2001
아르메니아공화국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연구, 2001
-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 Balkans: A Study of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 to, through and from the Balkan Region, 2001
발칸 국가의 인신매매 피해자들, 2001
- Migrant Trafficking in Poland: Actors, Mechanism, Combating, 1999
폴란드의 이주자 인신매매, 1999

인신매매 방지 활동의 평가

-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ology for Mass Information Activities
대중 정보활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 방법론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Project for the Return and Reintegration of Trafficked and Other Vulnerable Women and Children between Selected 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2003
메콩지역 선별국 간 인신매매 피해자와 다른 취약 여성, 아동의 귀환과 재통합을 위한 IOM 프로젝트에 대한 감찰국의 일반 평가, 2003
- Evaluation IOM Regional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the Western Balkans, SIDA 2003
발칸서부지역의 IOM 지역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IDA 2003
- Evaluation of the Counter-trafficking Programme in Moldova, SDC/IOM 2003
몰도바의 인신매매 방지 프로그램 평가, SDC/IOM 2003
- Evaluation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Government of Kyrgyzsta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of Action – Combating Trafficking and Smuggling in Human Beings, A. Rysaliev 2003
행동 계획 실행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기술적 원조에 대한 평가 – 인신매매와 밀입국 퇴치, A. Rysaliev 2003
- IOM MIC Evaluation of Project for Awareness Raising and Information Strategy on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2002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 향상과 정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한 IOM MIC의 평가, 2002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the IOM Information Programme in the Philippines, 1999
필리핀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관의 일반 평가, 1999
-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Evaluation of IOM Public Information Programme, 1999
IOM 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감찰국의 일반 평가, 1999

미주기구 소속 미주위원회 (Inter-American Commission,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http://www.oas.org/cim/>)

- In Modern Bondage: Sex Trafficking in the Americas: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근대적 구속: 미주의 성 인신매매: 중앙아메리카와 카리브 연안 국가

런던 위생 및 열대의과대학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LSHTM)

- The Health Risks and Consequences of Trafficking in Women and Adolescents,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2003
(<http://www.lshtm.ac.uk/hpu/docs/traffickingfinal.pdf>)
인신매매가 여성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건강 위험과 결과,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 국제 비준서 전문 출처

인신매매 방지와 근절에 관한 브뤼셀 선언

Brussels Declara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2)
<http://www.belgium.iom.int/STOPConference/Conference%20Papers/brudeclaration.pdf>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Initial Plan of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Persons (2002–2003)
http://www.unodc.org/pdf/crime/trafficking/Minimum_Plano_CEDDEAO.pdf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http://www2.ohchr.org/english/law/cerd.htm>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cpr.htm>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http://www2.ohchr.org/english/law/cescr.htm>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금지 및 즉각적 조치에 관한 협약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182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1999)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82>

유럽안보협력기구,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행동 계획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ction Plan to Comba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03)

<http://osce.org/pc/42708>

동남아시아협력연합,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협약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Women and Children for Prostitution

<http://www.saarc-sec.org/userfiles/conv-trafficking.pdf>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http://www.unicef.org/crc/>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http://www2.ohchr.org/english/law/cmw.htm>

초국가적 조직범죄 근절을 위한 유엔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eng.pdf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인권 및 인신매매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Recommended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Human Trafficking (2002)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ffickinge.pdf>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한 밀입국 중개 방지에 관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against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smug_eng.pdf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처벌을 위한 유엔 의정서

United Nations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http://www.uncjin.org/Documents/Conventions/dcatoc/final_documents_2/convention_%20traff_eng.pdf

세계인권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http://www.un.org/en/documents/udhr>

웹사이트

Council of Europe, <http://www.coe.int/>

End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Purposes,

<http://www.ecpat.net/EL/index.asp>

European Union Summaries of Legislation,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

Fundación ESPERANZA, <http://www.fundacionesperanza.org.co/>

Global Alliance Against Traffic in Women, <http://www.gaatw.org/>

International Catholic Migration Commission, <http://www.icmc.net>

International Centre for Migration Policy Development, <http://www.icmpd.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www.iom.int>

La Strada – Prevention of Traffic in Women, <http://www.strada.cz>

Legislation Online, <http://www.legislationline.org/>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http://www.osce.org>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within OSCE),

<http://www.osce.org/odihr/>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links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http://www.ohchr.org>

The Protection Project, <http://www.protectionproject.org>

Save the Children, <http://www.savethechildren.net/alliance/index.htm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www.unicef.org>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http://www.unwomen.org>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www.unodc.org>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http://www.state.gov/g/tip/>

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http://www.state.gov/g/tip/rls/tiprpt/2004/>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www.who.int>